

한국병원약사회

수 신 약제부서장

(참 조)

제 목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(법률 제17208호)

1. 귀 원 및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보건복지부(이하 복지부) 약무정책과-1365호(2020.4.9.), “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(법률 제17208호) 공포 알림” 관련입니다.

3. 복지부(약무정책과)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7208호)이 2020년 4월 7일(화)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왔기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개정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법률 제17208호 개정 주요 내용>

- 약사국사시험의 응시자격을 “「고등교육법」 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”로 함(제3조).
- 약사 및 한약사 면허를 대여·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(제6조 및 제93조).
- 약사 또는 한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(제7조).
-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영업 양도 양수 시 지위승계 제도 도입함(제44조의5 신설).
- 국자자격으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함(제83조의3 신설).

붙임 : 약사법 일부개정법률(법률 제17208호, 2020.4.7. 공포) 1부 끝.

(사) 한국병원약사회



담당자	윤준호 과장	부 장	조용준	사무국장	전결 4P 손현아
문서번호	병약 2020-169호	(2020.4.9.목)			
우 06725	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42	갑목빌딩 7층	홈페이지	http://www.kshp.or.kr	
전화번호	02-583-0887	팩스번호	02-521-5629	전자우편	kshp21@korea.com / 공개